

수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82643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826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5473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임정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케이 담당변호사 임승규

변론종결 2024. 9. 4.

판결선고 2024. 10.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5473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 을 6호증으로 제출한 ‘(영주) D발전소 진행내역’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고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한, 판사 조정민, 판사 조현준